의 안 번 호	제 2014 - 12호
의 결 연 월 일	2014. 12. 12. (제5회)

의결사항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국민연금공단 본부 지방이전 사업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 출 자	위원장 문 형 표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4. 12. 12.

1. 의결주문

○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2014년 국민연금공단 본부 지방이전 사업 총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본부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한도액으로 설정하기 위해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총사업비 140,138백만('12.10) → 125,261백만('14.11)

** 공사비 계약체결액 : 56,629백만(기금운용본부 공사비 제외)

3. 주요내용

○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의 **연금지급금(320-03)**에서 **5,663백만원을 전환**하여 국민연금공단 **본부 지방이전 사업의 시설비(420-03) 5,663백만원을 증액**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하였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14.7), 201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다. 관계부처협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와 협의 중

< 별 지 >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국민연금공단 본부지방이전 사업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

2014. 12. 12.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

□ 변경내역

○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의 **연금지급금(320-03)에서 5,663백만원을 전환하여** 국민연금공단 **본부 지방이전 사업의 시설비(420-03) 5,663백만원을 증액**

* 2014년도 국민연금급여 예산 14조5,814억원에서 11조4,353억원 집행('14.10월 말 기준)으로 약 8천억원의 집행잔액 예상

□ 변경사유

○ 본부 지방이전 사업의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한도액*으로 설정하기 위한 재원 마련 필요**

* **자율조정한도액 설정** : 정해진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도중, 현장여건 변동(지장물 또는 연약 지반의 발견 등)·물가상승·법적경비 발생 등과 같이 설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번 설계와 계약을 변경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이를 생략하고 일정 금액(공사비 낙찰가액의 10%)의 여유분을 확보하여 총사업비와 별도로 집행·관리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14.4) >

제97조【정의】 중앙관서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 소관부처에서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98조【자율조정의 적용단계】 ①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제102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공 중에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 사업으로 편입된 사업에 대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일을 기준으로 잔여 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7조(정의)~제102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 사업구상 또는 설계 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율조정한도액 설정시기를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기는 어려움

○ '14년 11월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2차 심의·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본부 공사비 낙찰가액(56,629백만원)의 10%(5,663백만)를 지방이전 사업비로 추가 확보하고자 함**

* 참고 : 총사업비 조정결과

2. 추가소요액 산출 내역

○ '14년 11월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 완료됨에 따라, 공사비 최종 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

○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공사비	자율조정 한도 설정액	세부 반영내역
1차 (2012.10.)	140,138	71,089	-	* 실시설계 단계로 한도액 미설정
2차 (2014.11.)	**125,261**	**56,629**	**5,663**	*** 공사비 56,629백만원*10%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 완료)**

3. 총사업비 조정 결과(2014.11)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 지방이전 계획승인 ('09.6.)	1차 조정 실시설계 결과 ('12.10.)	2차 조정 공사계약체결, 기금운용본부 이전 반영 ('14.11.)	조정 내용
총사업비	136,450	140,138	**125,261**	
1 본부 이전	92,041	95,729	**81,614**	· 낙찰차액 감액
○ 공사비	63,883	71,089	56,629	○ **낙찰차액 : △14,460** ▪ 낙찰가액 : 35,750 - 건축 : 30,082, - 전기 : 4,059 - 통신 : 1,581 - 폐기물처리 : 28 ▪ 관급자재비 : 20,879
○ 토지비	18,538	15,100	15,100	
○ 시설부대경비	9,620	9,540	9,885	
▪ 설계비	3,010	2,930	3,190	
▪ 감리비	3,320	3,320	2,273	
▪ 시설부대비	3,290	3,290	4,422	· 본사 이전비 포함
2 기금운용본부 이전	-	-	**43,647**	· 기금운용본부 이전비용
○ 공사비	-	-	33,880	
○ 토지비	-	-	6,454	
○ 시설부대경비	-	-	3,313	
▪ 설계비	-	-	1,354	
▪ 감리비	-	-	1,881	
▪ 시설부대비	-	-	78	
3 이전 및 지원비	44,409	44,409	**0**	
○ 본사 이전비	1,800	1,800	0	· 시설부대비로 조정
○ 이주수당	9,162	9,162	0	· 총사업비에서 삭제
○ 직원 이사비	780	780	0	· 총사업비에서 삭제
○ 주거지원	32,667	32,667	0	· 총사업비에서 삭제
사업기간	**'10~'14**		**'10~'16**	· 기금운용본부 절대공기 확보를 위한 기간연장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 변경			주요변경 내 역
	계획현액	변경요구	증감	
국민연금기금(합계)	**105,620,185**	**105,620,185**	**-**	
[7300]국민연금기금운영비	405,245	-	-	
[7400]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 위탁 등)	**239,590**	**245,253**	**5,663**	본부 지방이전 시설비 활용
[7431]국민연금공단사옥확보	69,217	74,880	5,663	
[451]국민연금공단 사옥신축 및 매입	30,270	30,270	-	
[452]국민연금공단본부지방 이전	13,243	18,906	5,663	
[410]토지매입비	6,872	-	-	
[420]건설비	6,371	12,034	5,663	
[01]기본조사설계비	465	-	-	
[02]실시설계비	932	-	-	
[03]시설비	3,823	9,486	5,663	본부 지방이전 시설비 활용
[05]시설부대비	1,151	-	-	
[453]국민연금공단사옥운영사업	21,380	-	-	
[454]국민연금공단 본부이전직원 주거지원	4,324	-	-	
[7432]국민연금제도운영사업	25,158	-	-	
[7433]국민연금복지사업	36,095	-	-	
[7477]기금운용위탁사업	34,647	-	-	
[7478]국민연금징수업무위탁사업	74,473	-	-	
[7600]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등)	**14,573,900**	**14,568,237**	**△5,663**	본부 지방이전 시설비 확보
[7631] 국민연금급여지급	14,573,900	14,568,237	△5,663	
[401] 국민연금급여지급	14,573,900	14,568,237	△5,663	
[320] 민간이전	14,573,900	14,568,237	△5,663	
[320-03] 연금지급금	14,573,900	14,568,237	△5,663	본부 지방이전 시설비 확보
[9700]여유자금운용	90,401,450			

* 향후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Ⅱ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14.11.28.(金), 금융투자교육원 501호

○ (참석)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13인, 복지부 및 기금운용본부 관계자

□ 심의결과 : 원안심의

○ 잠실본부 부동산 미매각 사유 질의·답변

- 공단 본부 부동산은 공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기금의 자산이므로 매각대상에서 제외*

  * ’09.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역발전위원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공단 지방 이전 시 각 기관 본부 부동산에 대해 미매각 결정

- 본부 이전 이후 잠실사옥에는 송파지사, 장애심사센터 등 현재 임차지사 입주 계획

○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 방안, 서울사무소 설치 등 금융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기재부, 보사연, 한국노총)

- 타 기관 이전 사례를 참고하고, 필요시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등에 의견* 제시 필요(한국노총)

  * 스마트워크센터, 서울사무소, 독신자 숙소 마련 등

참고 1 **관련 법령**

〈 국가재정법 〉

○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이하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재부) 〉

○ **제97조(정의)** 중앙관서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 소관부처에서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 **제100조(자율조정 항목)** ①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3. 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 붙임 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

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 **제102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공 중에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 사업으로 편입된 사업에 대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일을 기준으로 잔여 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참고 2 국민연금공단 본부지방이전 사업

□ 사업목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의한 국민연금본부사옥 신축

□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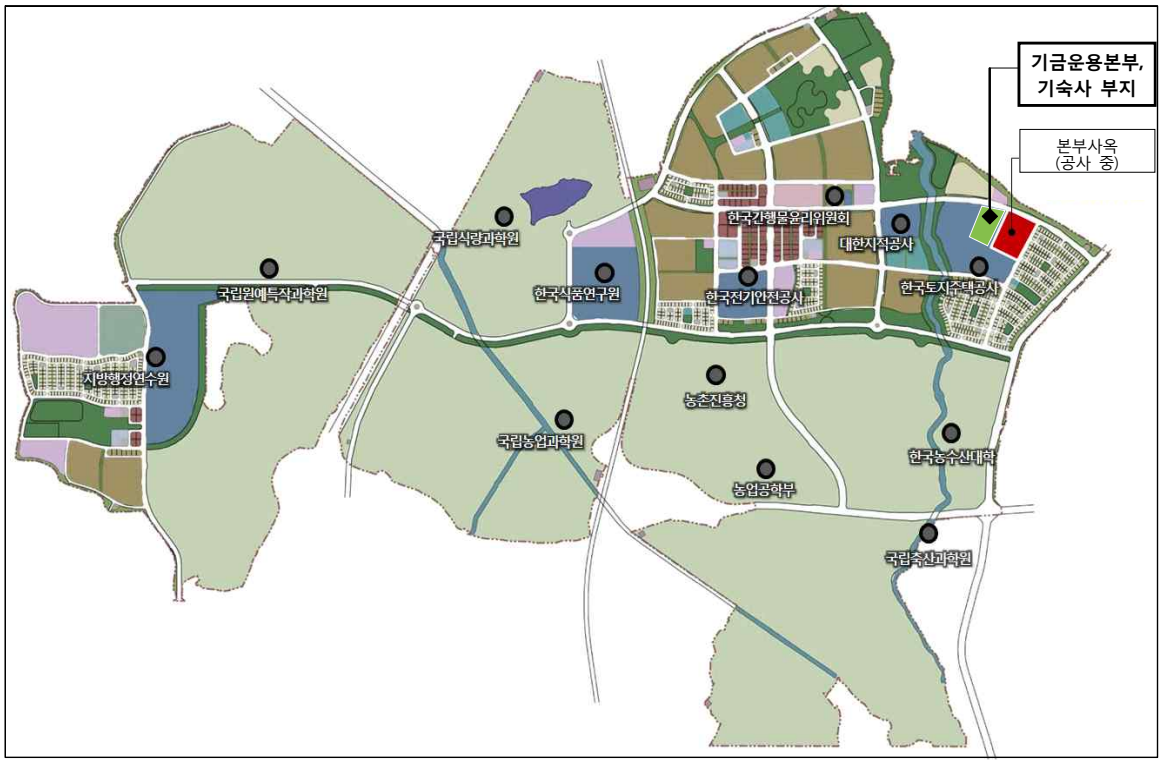
□ 사업내용

총사업비	125,261백만원	사업기간	2010~2016년(7년)
총사업비 주 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위탁)	사업지역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 1-5~6 - 이전인원 : 846명(본부573명, 기금운용본부273명)
사업규모	·부지면적 52,551㎡, 건축연면적 50,935㎡ - 본부사옥 : 부지면적 33,851㎡, 건축연면적 32,235㎡(지하1,지상10층) - 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 부지면적 18,700㎡, 건축연면적 18,700㎡['14.2월 국토부 승인]		
주요시설	업무시설(본부사옥, 기금운용본부), 정보통신센터, 어린이집		

□ 추진경과

○ 국토해양부 지방이전 지역 변경 발표(진주→전주)	2011. 5. 16.
○ 지방이전 본부사옥 신축공사 착공	2013. 4. 1.
○ 국민연금법 개정(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	**2013. 6. 27.**
○ 국토교통부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통보	**2014. 2. 3.**
○ 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설계용역 계약체결	2014. 7. 8.
○ 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설계용역 기본설계 완료	2014. 9. 3.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 및 조정결과 통보(2차 조정)	2014. 11. 3.
○ 국토교통부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요청 (예정)	2014. 12.

* 위치도


기금운용본부,
기숙사 부지
본부사옥
(공사 중)
국립식량과학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한지적공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행정연수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농업공학부
국립축산과학원

* 조감도(본부 사옥)

